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8 선고 2020가단547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담당변호사 김태영)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3.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88,771,1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771,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2014. 11. 2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C 대표이사)는 C가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금융기관(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20. 5. 6.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2020. 5. 22.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C 및 B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44,25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 3) 그런데 B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0. 4. 3.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2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법원 접수 제15759호).
- 4)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2억 9,300만 원(① 이 사건 아파트(시가 1억 6,400만 원), ② E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2,90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금만으로도 합계 1,557,048,092원(①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무 344,250,000원, ② F카드 카드대금 및 대출금 14,990,415원, ③ G카드 카드대금 및 대출금 18,552,980원, ④ H카드 카드대금 9,914,162원, ⑤ I카드 카드대금 및 대출금 12,920,535원), ⑥ J은행 보증채무 64,800,000원, ⑦ 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 762,000,000원, ⑧ D은행 보증채무 76,500,000원, ⑨ K은행 보증채무 150,120,000원, ⑩ L조합 대출금 103,000,000원)에 이르러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는 토지, 건물 및 보험 해지환급금 등 합계 13억 8,600만 원에 이르는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채무는 1억 9,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11억 8,800만 원이 넘는 순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5) 이러한 상황임에도 B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약 1개월 앞두고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조차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B에를 상대로 사전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재산분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다만,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228,896원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2020. 5. 22. 말소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7. 9.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69,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88,771,104원(= 위 169,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228,8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88,771,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B와 떨어져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이른바 ‘주말부부’ 형태로 생활하였고, 그때부터 3명의 자식 역시 피고가 홀로 양육하였다. 그러던 중 자식들이 성년에 가까워지자 각자의 삶을 살기로 B와 협의하였고, 이에 2019. 10. 4.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 14.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2020. 4. 3.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하였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B와 피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B와 사실상 별거하면서 자식 3명의 양육을 전담한 점,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자식의 양육권을 가지고 B는 미성년 자식 2명의

양육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점,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고가 독자적인 투자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B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는 B의 사업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고, B와 피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9. 10.경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놓은 상황이었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그 액수,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의 무자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원고의 순재산 가액은 -13억 4,400만 원(원고가 주장하는 B의 적극소극 재산 내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8,000만 원을 추가로 고려함)이

넘고, 당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데, 당시 피고의 순재산 가액은 13억 8,600만 원이 넘어서, B와 피고의 순재산 차이는 약 23억 원 내지 26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경우 설령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본다 하더라도 B가 피고에게 분할해 줄 수 있는 재산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쌍방 순재산 가액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B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나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전부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와 피고의 가정경제는 온전히 B의 수입에만 의존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가 가정경제에 어떠한 수입이라도 보태었다고 볼 자료나 사정이 없으며, 피고가 자신 명의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구입 자금의 출처 내지 형성 경위를 별도로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반면 B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이나 기타 적극재산을 거의 취득하지 않았는바, B는 자신의 연대보증인 지위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적극재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또한,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는 B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 오랜 기간 ‘주말부부’ 형태로 생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사업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B의 사업은 사실상 가정경제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더욱이 B는 2020. 7.경 파산을 신청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가정의 생활비도 주기 어렵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원비도 내기 어려워 학원을 전부 끊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갑 제7호증의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88,771,104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169,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228,8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88,771,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

1) 원고는 12,544,344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12,920,535원의 오산(誤算)으로 보인다.